

[별표 1]

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(제4조제1항 관련)

1. 공시기준

가. 현장기준

심사사항	검토기준
1) 경영관리	<p>가) 다음의 경영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공시기관이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.</p> <p>(1)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원료 및 제품 수급, 생산시설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자료</p> <p>(2)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받으려는 자재의 생산·수입 및 출하에 관한 자료</p> <p>나) 공시기관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.</p>
2) 작업장	<p>가) 작업장은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생산계획서와 일치하여야 한다.</p> <p>나) 다른 원료나 유기농업자재와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이 용도별(원료처리·제조·포장 등)로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.</p> <p>다)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·유해가스·증기 등의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p>라) 청소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여 작업장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
3) 제조설비	<p>가) 제조설비는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생산계획서에 기재된 생산설비 등과 일치하여야 한다.</p> <p>나) 가)의 제조설비물이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제조·가공을 위해 적정하여야 하며, 주요 기계설비는 성능유지를 위하여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다) 보관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, 원료·재료의 유출 및 기화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 환경조건을 유지하고 입·출고 관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.</p> <p>라) 공시받은 원료 외 다른 원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</p>

마) 전문화된 시설·장비를 갖추고 공시 자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시 사업장에 제조공정을 위탁하여 생산하는 경우 제조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작업표준, 품질관리 의무 사항, 제조물 책임, 기록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생산하는 유기농업자재의 규격 및 품질기준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공시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한해 유기농업자재로 판매하고 공시제품에 대해 책임을 진다.

③ 위탁자와 수탁자는 조사원 또는 공시심사원이 공시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관련 자료 제출, 시료수거, 현장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.

4) 공정 및 품질관리 가)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생산계획서에 기재된 제조공정 및 원료와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관리와 관련된 인력, 방법 등과 일치하여야 한다.

나) 작업표준(작업설비·작업방법·작업조건·작업상의 유의사항 등)을 수립하여야 하며,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다) 품질관리를 위한 기본 장비를 갖추고 유기농업자재는 해당 규격 및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·검사하여야 한다. 다만, 품질관리를 위한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을 때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.

5) 기록 및 이력관리 가) 유기농업자재는 적정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며, 원료 및 유기농업자재의 입·출고에 관한 기록장을 비치하고,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(신고)된 유기농업자재는 같은 법 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장부(비료의 제조원료 기재 장부)로 대체할 수 있다.

나) 기록장에는 다음의 필수기록 사항과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.

(1) 입고이력: 입고일자, 물량, 자재명, 생산자 또는 수출자명·원산지·롯데번호 또는 생산일자

(2) 출하이력: 출하한 판매처명·판매처 주소·날짜·제품명·물량·

나. 원료의 특성 등에 관한 자료

심사사항	검토기준
1) 원료	<p>가) 유기농업자재에 사용한 원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.</p> <p>(1)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: 규칙 제2조 및 별표1 제1호가목1)의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.</p> <p>(2) 병해충관리 : 규칙 제2조 및 별표1 제1호가목2)의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</p> <p>나) 규칙 별표1 제3호의 유기농업자재 제조시 사용가능한 보조제 중 화학합성 보조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의 불가피성, 사용량의 적정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.</p>
2) 원료의 특성 및 유래	<p>가) 유기농업자재에 사용된 각각의 원료에 대한 특성은 다음의 사항이 적합하여야 한다.</p> <p>(1) 물질의 기원 및 분포</p> <p>(2) 유효 구성물질의 종류 및 함량</p> <p>(3) 제3조제1항의 사용용도를 뒷받침할 자료(학술자료, 연구논문, 시험성적 등)</p> <p>(4) 농업분야 사용현황 등</p> <p>나) 유기농업자재에 사용된 각각의 원료별로 생산지·제조사·구매경로 등 출처가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.</p> <p>다) 원료의 출처가 불명확할 때에는 그 출처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.</p> <p>라) 원료는 농업용으로 사용가능하여야 하며,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4의2 제3호 가목(R-5)에 해당 하거나 「비료관리법」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것 이어야 한다.</p>
3) 제조조성비	<p>가) 원료명은 가공되기 전의 물질에 대한 일반적 명칭으로 규칙 별표1의 허용물질의 종류에서 정한 사용가능한 물질의 명칭이어야 한다.</p> <p>나) 주성분은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에 도움을 주거나 병해충관리를 위하여 활성을 가지는 성분에 대하여 종류 및 그 함량을 나타내어야 한다.</p> <p>다) 원료의 투입비율은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</p>

를 모두 기입하여야 하며 합계가 100퍼센트이어야 한다.

다. 이화학(미생물검정) 검사성적서

심사사항	검토기준
1) 주성분 검사	<p>가)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주성분 검사성적은 다음의 사항이 적합하여야 한다.</p> <p>(1)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한 자재는 비료관리법 제18조 및 제24조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「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」에서 이화학적 검사방법이 설정된 주성분 및 기타성분에 대한 성적이어야 한다.</p> <p>(2) 병해충관리를 위한 자재는 병이나 해충에 대하여 활성을 나타내는 성분 또는 대표성분에 대한 성적이어야 한다.</p> <p>나) 살아있는 미생물을 주·부원료로 하는 유기농업자재에 대해서 다음의 사항이 적합하여야 한다.</p> <p>(1) 유효미생물의 분류학적 위치·일반명·학명</p> <p>(2) 유효미생물의 보증균수는 신청인이 제출한 보증균수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p>(3) 생균수 검사방법은 신청인이 제출하거나 공인 또는 표준화된 검사방법이어야 한다.</p> <p>(4) 유효미생물 배양에 필요한 배지조성 자료는 해당 미생물 배양에 적절하여야 하며 인축에 위해한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.</p> <p>(5) 유효미생물의 동정은 균체 지방산 분석법, 전자동미생물 동정법 또는 현미경법 등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에 의한 분자 생물학적 방법에 의하며, 동정결과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속·종명이어야 한다.</p> <p>다) 천적을 이용한 유기농업자재는 다음의 사항이 적합하여야 한다.</p> <p>(1) 천적의 분류학적 위치·일반명·학명</p> <p>(2) 천적의 분류동정상의 특성</p> <p>(3) 천적의 보증수는 신청인이 제출한 보증수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p>(4) 동정방법은 신청인이 제출하거나 공인 또는 표준화된 동정방법이어야 한다.</p>

다.

- (5) 천적의 동정(同定)검사성적서와 제출서류에 기록된 천적은 동일하여야 한다.
- (6) 보증한 천적 이외에 다른 천적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인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없어야 한다.
- (7) 천적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.

종 류	항 목	품질 기준	참고(IOBC 기준)
갈색만날개	개체수	라벨 표기된 생존 개체수	-
	성 비	≥ female 50%	-
	산란력	≥ 40 eggs/female/5days	-
굴파리좀벌	개체수	라벨에 표기된 생존 성충수	라벨에 표기된 생존 성충수
	성 비	≥ female 50%	≥ female 45%
	사망률	≤ 성충 사망률 3%	≤ 성충 사망률 8%
	산란력	≥ 70% 암컷이 7일 이내 산란	≥ 70% 암컷이 7일 이내 산란
담배가루이좀벌	개체수	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	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
	성 비	≥ female 50%	≥ female 50%
	산란력	≥ 12 eggs/female	≥ 10 eggs/female
담배장님노린재	개체수	라벨 표기된 생존 개체수	-
	성 비	≥ female 45%	-
	산란력	≥ 7 eggs/female/3days	-
무당벌레	개체수	라벨 표기된 생존 개체수	-
	포식력	≥ 25aphids/larva/day	-
뱅커플랜트	개체수	라벨에 표기된 생존 진딧물수	-
	병해충 발생	없음	-
복숭아혹진디벌	개체수	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	-
	성 비	≥ female 50%	-
	산란력	≥ 40/female/5day	-
숨이애꽃노린재	개체수	라벨에 표기된 생존 개체수	라벨에 표기된 생존 개체수
	성 비	≥ female 50%	≥ female 50%
	산란력	≥ 50 eggs/female/14days	≥ 30 eggs/female/14days
짜리진디벌	개체수	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	-
	성 비	≥ female 50%	-
	산란력	≥ 40/female/5day	-
쌀좀알벌	개체수	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	-
	성 비	≥ female 50%	-
	수 명	최소 80% 암컷 5일 이상 생존	-
	산란력	≥ 55 eggs/female/7days	-
아큐레이퍼응애	개체수	라벨에 표기된 생존 약, 성충수	-
	성 비	≥ female 50%	-
	산란력	≥ 7 eggs/female/7days	-
어비진디벌	개체수	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	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

	성 비 산란력	≥ female 50% ≥ 40/female/2hour	수 ≥ female 45% ≥ 35/female/2hour
오이이리응애	개체수 성 비 산란력	라벨에 표기된 생존 약, 성충수 ≥ female 50% ≥ 10 eggs/female/7days	라벨에 표기된 생존 약, 성충수 ≥ female 50% ≥ 7 eggs/female/7days
온실가루이좀벌	개체수 성 비 산란력	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≥ female 98% ≥ 8 eggs/암컷/1일/우화 후 2,3,4일차	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≥ female 98% ≥ 7 eggs/암컷/1일/우화 후 2,3,4일차
유럽애꽃노린재	개체수 성 비 산란력	라벨에 표기된 생존 개체수 ≥ female 50% ≥ 50 eggs/female/14days	라벨에 표기된 생존 개체수 ≥ female 50% ≥ 30 eggs/female/14days
으뜸애꽃노린재	개체수 성 비 산란력	라벨에 표기된 생존 개체수 ≥ female 50% ≥ 50 eggs/female/14days	- - -
잎굴파리고치벌	개체수 성 비 사망률 산란력	라벨에 표기된 생존 성충수 ≥ female 45% ≤ 성충 사망률 5% ≥ 45eggs/female/3days	라벨에 표기된 생존 성충수 ≥ female 45% ≤ 성충 사망률 5% ≥ 40eggs/female/3days
지중해이리응애	개체수 성 비 산란력	라벨에 표기된 생존 약, 성충수 ≥ female 50% ≥ 10 eggs/female/7days	- - -
진디면충좀벌	개체수 성 비 산란력	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≥ female 40% ≥ 20/female/2days	- - -
진디혹파리	개체수 성 비 우화율 산란력	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≥ female 50% ≥ 70%/7days ≥ 40eggs/female/3days	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≥ female 45% ≥ 70%/7days ≥ 40eggs/female/3days
칠레이리응애	개체수 성 비 수 명 산란력	라벨에 표기된 생존 약, 성충수 ≥ female 75% 산란력 테스트시 ≥ 80% 생존 /5days ≥ 12 eggs/female/5days	라벨에 표기된 생존 약, 성충수 ≥ female 70% 산란력 테스트시 ≥ 80% 생존 /5days ≥ 10 eggs/female/5days
캘리포니쿠스응애	개체수 성 비 수 명 산란력	라벨에 표기된 생존 약, 성충수 ≥ female 65% 산란력 테스트시 ≥ 80% 생존 /5days ≥ 7 eggs/female/5days	라벨에 표기된 생존 약, 성충수 ≥ female 60% 산란력 테스트시 ≥ 80% 생존 /5days ≥ 7 eggs/female/5days
콜레마니진디벌	개체수 성 비 산란력	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≥ female 50% ≥ 45mummies/female/1 st day	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≥ female 45% ≥ 35 mummies/female/1 st day
호랑풀잠자리	개체수 포식력	라벨 표기된 생존 개체수 ≥ 15aphids/larva/day	- -

황온증별	개체수 성 비 산란력	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≥ female 45% ≥ 50 eggs/female/3days	라벨에 표기된 우화 성충수 ≥ female 45% ≥ 45 eggs/암컷/3일
------	-------------------	--	---

라) 키토산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는 다음의 사항이 적합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른 공정분석법에 따라 수행한 시험성적이어야 한다.

(1) 제품의 키토산(총 글루코사민) 또는 키토올리고당의 최소량(%) : 1.0%이상

(2) 원료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

(가) 키토산의 점도(cps) : 1이상 100이하

(나) 키토산의 순도 : 800mg/g 이상

(다) 키토올리고당 순도 : 200mg/g 이상

※ 키토산(글루코사민) 단당은 제외

2) 유해성분 검사 가)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,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에서는 유기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.

나) 유해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(1)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중 규칙 별표17 제3호 나목 1)에 따라 농관원장이 정하는 유해중금속의 최대허용량(건물기준 중량)은 비소 20mg/kg, 카드뮴 2mg/kg, 수은 1mg/kg, 납 50mg/kg, 크롬 90mg/kg, 구리 120mg/kg, 니켈 20mg/kg, 아연 400mg/kg이며 제품이 액상인 경우에는 현물기준 중량으로 한다.

다) 병원성미생물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(1)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, 퇴비화된 가축 배설물 등을 사용한 퇴비는 다음의 병원성미생물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.

(가) 병원성대장균(*Escherichia coli* O157: H7)

(나) 살모넬라(*Salmonella* spp.)

(2) 살아있는 미생물을 주·부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나 미생물 발효 공정을 거친 유기농업자재는 다음의 병원성미생물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.

(가) 병원성대장균(*Escherichia coli* O157 : H7)

(나) 살모넬라(*Salmonella* spp.)

(다) 황색포도상구균(*Staphylococcus aureus*)

(라)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(*Listeria monocytogenes*)

	<p>(마) 바실러스 세레우스(Bacillus cereus)</p> <p>라) 가축분·혈분 등 가축의 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는 다음의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.</p> <p>(1) 테트라사이클린계(Tetracyclines)</p> <p>(2) 베타락탐계(Beta-lactams)</p> <p>(3) 설파계(Sulfonamides)</p> <p>(4) 마이크로라이드계(Macrolides)</p> <p>(5)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(Aminoglycosides)</p> <p>마) 아주까리 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 또는 그 원료인 아주까리 유박은 「비료관리법」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한 리친(Ricin)의 유해성분 최대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</p> <p>바) 나) 및 다)에도 불구하고 키토산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의 유해성분 기준은 다음의 사항이 적합하여야 한다.</p> <p>(1) 유해중금속의 최대허용량(건물기준 중량)은 비소 4mg/kg, 카드뮴 0.4mg/kg, 수은 0.2mg/kg, 납 20mg/kg, 크롬 20mg/kg, 니켈 20mg/kg이며 제품이 액상인 경우에는 현물기준 중량으로 한다.</p> <p>(2) 대장균(Escherichia coli)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.</p> <p>(3) 사용한 용제를 표시해야 하고 보존기간을 2년 이내로 해야 한다.</p>
--	---

라.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

심사사항	검토기준
1) 유식물 등에 대한 비료피해(肥料被害)·농약피해(藥害) 시험	<p>가) 다섯 가지 작물 이상(배추·상추·고추·오이·콩 등)에 대하여 공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유기농업자재를 포장시험하거나 비료피해(肥料被害)·농약피해(藥害)에 민감한 유식물체·신초 또는 종자에 신청인이 제시한 기준량과 2배량을 처리한 후 일정기간을 두어 3회 이상 조사한 시험성적이어야 하며 시험과정 및 시험결과에 대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절하여야 한다. 단, 일부 작물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유기농업자재의 경우에는 해당 작물에 시험한 성적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다.</p> <p>(1) 시험작물, 시험구 면적 및 배치방법</p>

(2) 시험물질의 처리시기 및 방법

(3) 시험결과의 분석 및 판정

나) 농약피해(藥害)·비료피해(肥害)의 정도는 시험성적 모두가 기준량에서 0 이하이거나, 2배량에서 1 이하이어야 한다.

다) 비료피해(肥害)·농약피해(藥害)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.

정도	판 정 기 준
0	육안으로 비료피해(肥害)·농약피해(藥害)가 인정되지 않음
1	아주 가벼운 비료피해(肥害)·농약피해(藥害)로서 작은 약반이 약간 인정됨
2	처리된 잎의 소부분에서 비료피해(肥害)·농약피해(藥害)가 인정됨
3	처리된 잎의 50퍼센트 정도 비료피해(肥害)·농약피해(藥害)가 인정됨
4	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으나 아직 건전한 부분이 남아 있음

마.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

심사사항	검토기준
1) 공통조건	<p>가) 독성시험은 병해충관리를 위한 다음의 허용물질을 포함한 유기농업자재를 시험대상으로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식물과 동물의 추출물. 단, 식품등급의 오일은 제외 (2) 미생물 및 미생물의 추출물 (3) 미생물의 발효부산물 (4) 구리염, 보르도액, 수산화동, 산화염화동, 보르고뉴액 (5) 규산나트륨 (6) 인산철, 파라핀오일, 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, 과망간산칼륨 (7) 황 (8) 기계유 <p>나)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독성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유기농업자재 또는 원료 각각에 대하여 과학적(국내외 독성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)으로 인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(2) 물질의 특성상 시험수행이 불필요한 경우

<p>2) 인축독성</p>	<p>(3) 사용방법 등 유기농업자재의 특성상 불필요한 경우 (4) 독성시험 항목별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</p> <p>가) 인축독성시험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을 준용하되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(1) 급성경구·경피독성시험 결과는 Ⅲ급(보통독성) 이하이어야 한다. 다만, 미생물제제는 유기농업자재에 함유된 미생물의 단위 환산치로 평가한다.</p> <p>(2) 안점막자극성시험 평가결과에 따라 표시문구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.</p> <p>(3) 피부자극성시험 평가결과에 따라 표시문구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.</p>
<p>3) 환경독성</p>	<p>가) 환경독성시험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을 준용하되 검토기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(1) 급성어류 독성은 Ⅲ급에 해당되어야 하고, 독성노출비(Toxicity Exposure Ratio: TER)를 이용하여 산출하며 독성노출비는 2를 초과하여야 한다. 다만, 살아있는 미생물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는 독성노출비가 100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p>(2) 물벼룩류에 대한 급성유영저해시험을 실시한 품목은 독성노출비를 산출하여 2를 초과하여야 한다. 다만, 살아있는 미생물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는 독성노출비가 100 이상이어야 한다. 또한 물벼룩류에 대한 급성유영저해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</p> <p>(가) 급성어류 독성시험성적의 반수치사농도(LC50)가 100mg/L 이상인 경우</p> <p>(나) 제품의 사용방법 및 특성상 물벼룩류에 노출가능성이 없는 경우</p> <p>(다) 생태계 생물에 위해성이 없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경우</p> <p>(3) 꿀벌에 대한 급성접촉독성시험 또는 영향시험을 실시한 품목은 그 시험성적서 평가결과에 따라 표시문구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꿀벌에 대한 급성접촉독성시험 또는 영향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</p> <p>(가) 학술논문 등 시험물질이 독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</p> <p>(나) 저장고 내에서 사용하는 것</p>

	<p>(다) 유묘나 종자·종구에 처리하는 것</p> <p>(라) 화분매개충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</p> <p>(마) 그 밖에 유기농업자재의 사용방법 상 꿀벌에 대한 노출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</p> <p>(4) 물벼룩류에 대한 급성유형저해시험과 꿀벌에 대한 급성접촉독성시험 또는 영향시험은 유기농업자재의 용도와 환경노출 정도를 고려하여 농관원장이 국립농업과학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</p>
--	---

바. 제조공정, 품질관리 등에 대한 자료

심사사항	검토기준
1) 제조공정	<p>가) 유기합성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고 화학적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한다. 단, 병해충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에서 천연추출물의 추출·분리 및 정제 과정상 불가피하게 유기합성용매를 사용한 경우에는 최종 원료에 잔류되지 않아야 한다.</p> <p>나) 제조공정은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생산에 적합하여야 한다.</p> <p>다) 미생물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농업자재(토양미생물제제, 미생물제제 등)는 원료외의 다른 미생물에 의해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</p>
2) 품질관리	<p>가) 공시를 받으려는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관리 규격이나 품질기준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.</p> <p>나) 공시를 받으려는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관리 규격이나 품질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확인·검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 제 41조제1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</p> <p>다) 공시를 받고자 하는 유기농업자재가 「비료관리법」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「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」에서 설정 또는 지정된 비료의 종류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비료의 종류별로 정하고 있는 공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, 보증 성분량은 「비료관리법」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규격에 맞도록 품질이 유지되어야 한다.</p> <p>라) 공시를 받고자 하는 유기농업자재가 「농약관리법」 제8조 또는 제17조에</p>

	농약 또는 원제로 등록된 경우에 주성분의 함량은 등록된 규격에 맞도록 품질이 유지되어야 한다.
--	--

사. 포장지 표시사항에 관한 자료

심사사항	검토기준
포장지 표기방법	별표2의 유기농업자재의 주의사항 표시기준에 따라 주의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.

아. 그 밖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

심사사항	검토기준
1) 농약 또는 비료 등록에 관한 증빙서류	가) 「농약관리법」 또는 「비료관리법」에 따라 등록된 자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한다.
2) 책임보험 가입증서	가) 책임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.
3) 사업자등록증	가)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.
4) 외국의 자재 인증관련 자료	<p>가) 수입완제품(수입완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은 유기농업 관련 기준에 따라 국제기구나 그 기구로부터 지정받은 인증기관 또는 수입국가나 그 국가가 공인한 인증기관에서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절하여야 하며, 공시의 유효기간동안 인증(공시)관련 증명서의 유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.</p> <p>(1) 인증(공시)관련 증명서 발급기관의 신뢰성</p> <p>(2) 해당 제품이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의 명시 여부</p> <p>(3) 인증(공시)기간의 유효성</p> <p>(4) 국내 공시기준에 적합여부</p> <p>나) 인증(공시)관련 증명서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증을 할 수 있다.</p>

5) 원료 공급 증명서	<p>다만, 인증(공시)관련 증명서가 명확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다) 공시기관이 가)에 해당하는 인증기관 등의 홈페이지 등에서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임을 확인 가능한 경우 인증(공시) 관련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2. 7.></p> <p>가) 유기농업자재에 사용된 원료별로 원료공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
--------------	---

2. 효과·효능 표시 기준

가. 이화학(미생물검정) 검사성적서

심사사항	검토기준
주성분 검사	<p>가) 효과·효능 표시를 하고자 하는 유기농업자재의 주요 주성분에 대한 보증성분량 및 분석방법을 정립하여야 한다.</p> <p>나) 주성분 분석결과는 신청인이 제시한 보증성분량 이상이어야 한다.</p>

나.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

심사사항	검토기준
<p>1) 비료효과(肥效)·비료피해(肥害) 시험성적</p> <p>2) 농약효과</p>	<p>가) 효과·효능 표시를 하고자 하는 유기농업자재 중 토양개량과 작물 생육용 자재에 적용한다.</p> <p>나)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한 유기농업자재는 사용하려는 동일 작물에 대하여 2~3년간 또는 도 단위의 지역(50km 이상 격리된 장소)을 달리하여 실시한 2개 이상의 포장 시험성적으로 시험과정 및 시험결과에 대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절하여야 한다. 다만, 농작물의 범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1개의 시험성적만으로도 검토 할 수 있다.</p> <p>(1) 시험작물, 시험구 면적 및 배치방법</p> <p>(2) 시험물질의 처리시기 및 방법</p> <p>(3) 시험결과의 분석 및 효능평가</p> <p>다) 시험결과 통계적으로 무처리구 대비 효과가 인정되어야 하고, 기준량과 2배량 모두에서 비료피해(肥害)가 없어야 한다.</p> <p>가) 효과·효능 표시를 하고자 하는 유기농업자재 중 병해충관리용 자</p>

(藥效)·농약	재에 적용한다.
피해(藥害) 시험성적	<p>나) 병해충관리를 위한 유기농업자재는 사용하려는 동일 작물에 대하여 2~3년간 또는 도 단위의 지역(50km 이상 격리된 장소)을 달리하여 실시한 2개 이상의 농약효과(藥效) 시험성적으로 시험과정 및 시험결과에 대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절하여야 한다. 단, 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을 달리하여 실시한 1개 이상의 농약효과(藥效) 시험성적을 제출할 수 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시험작물, 시험구 면적 및 배치방법 (2) 시험물질의 처리시기 및 방법 (3) 시험결과의 분석 및 효능평가 <p>다) 농약효과(藥效) 시험 결과 통계적으로 무처리 대비 50퍼센트 이상 방제효과가 인정되어야 하며 기준량과 2배량 모두에서 농약피해(藥害)가 없어야 한다.</p>
3) 예외사항	<p>「농약관리법」에 따라 등록된 농약이거나 「비료관리법」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비료인 경우에는 식물시험에 대한 포장시험 성적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</p>